엘리프 원종 입주자모집공고 [입주자모집공고일 : 2025.11.14.(금)]

ELIF 원종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(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) 종전통장(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)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,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택유형	해당지역	기타지역		규제지역여부
민영	경기도 부천시 거주자	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거주자		비규제지역
재당첨제한	**전매제한**	**거주의무기간**	**분양가상한제**	**택지유형**
없음	1년	없음	미적용	민간택지

1 단지 유의사항

■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.11.14.(금)입니다. (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, 나이,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) ■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 ■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 1순위	일반공급 2순위	당첨자발표	서류접수	계약체결
일정	2025.11.24.(월)	2025.11.25.(화)	2025.11.26.(수)	2025.12.02.(화)	2025.12.08.(월)~ 2025.12.12.(금)	2025.12.15.(월)~ 2025.12.17.(수)
방법	▪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~17:30) ▪ (현장접수) 사업주체 견본주택	▪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~17:30) ▪ (현장접수) 청약통장 가입은행		▪ (PC·모바일) 청약홈	▪ 엘리프 원종 견본주택 (주소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)	

※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(10:00~14:00, 은행창구 접수 불가),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·지점(09:00~16:00)에서 청약 가능함 (단,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) ※ 국방부(국군복지단)에서 추천한 "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"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.(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합니다.) ※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:30까지 가능하며, 청약신청일 당일 17: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. ※ 모바일 : 구글플레이스토어,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 - 모바일 청약 시,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를 바라며,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■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-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(비조정대상지역)으로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3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전매제한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(단,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
전매제한기간	최초 당첨자 발표일(2025.12.02.)로부터 1년	

■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
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- 14551호(2025.11.14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■ **공급위치** :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8-1번지 일원 ■ **공급규모**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14층 8개동 총 207세대[조합 109세대] 중 일반분양 98세대 [특별공급 49세대(기관추천 7세대, 다자녀 10세대, 신혼부부 21세대, 노부모부양 3세대, 생애최초 8세대)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 ■ **입주시기 : 2028년 01월 예정**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■ 공급대상

[단위 : ㎡ / 세대]

주택 관리번호	모델	주택형 (전용면적 기준)	약식 표기	주택공급면적(㎡) 주거 전용면적	주거 공용면적	소계	기타 공용면적 (지하주차장등)	계약 면적	세대별 대지지분	총공급 세대수	특별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	다자녀 가구	신혼 부부	노부모 부양	생애 최초	계	일반 공급 세대수	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
2025-000550	01	059.9800C	59C	59.9800	15.7587	75.7387	52.2807	128.0194	30.6583	20	2	2	5	1	2	12	8	1
	02	059.9200C1	59C1	59.9200	14.9073	74.8273	52.2284	127.0557	30.2894	11	1	2	2	-	1	6	5	2
	03	059.9600C3	59C3	59.9600	14.9249	74.8849	52.2633	127.1482	30.3127	52	4	4	12	2	3	25	27	4
	04	072.2300B	72B	72.2300	18.4008	90.6308	62.9582	153.5891	36.6865	7	-	-	1	-	1	2	5	2
	05	074.8600B1	74B1	74.8600	18.6515	93.5115	65.2506	158.7621	37.8525	8	-	2	1	-	1	4	4	1
합계										98	7	10	21	3	8	49	49	10

•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 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•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(전용면적+주거 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. •주택공급신청서의 [주택형] 또는 [형]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(㎡)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,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으니,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[평형 환산 방법 : 공급면적(㎡)×0.3025 또는 공급면적(㎡)÷3.3058] •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,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, 경로당,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,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, 지하 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,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.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[단위 : 세대, 원]

주택형 (약식표기)	층 구분	해당 세대수	분양가격 대지비	건축비	계	계약금(10%) 1차	2차 (계약후30일이내)	중도금(60%) 1차 2026.02.15	2차 2026.06.15	3차 2026.10.15	4차 2027.02.15	5차 2027.05.15	6차 2027.08.15	잔금(30%) 입주 지정일
59C	2층	1	170,100,000	315,900,000	486,000,000	10,000,000	38,600,000	48,600,000	48,600,000	48,600,000	48,600,000	48,600,000	48,600,000	145,800,000
	3~4층	3	170,100,000	326,100,000	496,200,000	10,000,000	39,620,000	49,620,000	49,620,000	49,620,000	49,620,000	49,620,000	49,620,000	148,860,000
	5~7층	6	170,100,000	341,500,000	511,600,000	10,000,000	41,160,000	51,160,000	51,160,000	51,160,000	51,160,000	51,160,000	51,160,000	153,480,000
	8~10층	5	170,100,000	347,600,000	517,700,000	10,000,000	41,770,000	51,770,000	51,770,000	51,770,000	51,770,000	51,770,000	51,770,000	155,310,000
	11~14층	5	170,100,000	350,200,000	520,300,000	10,000,000	42,030,000	52,030,000	52,030,000	52,030,000	52,030,000	52,030,000	52,030,000	156,090,000
59C1	2층	2	167,650,000	311,350,000	479,000,000	10,000,000	37,900,000	47,900,000	47,900,000	47,900,000	47,900,000	47,900,000	47,900,000	143,700,000
	3~4층	4	167,650,000	321,450,000	489,100,000	10,000,000	38,910,000	48,910,000	48,910,000	48,910,000	48,910,000	48,910,000	48,910,000	146,730,000
	5~7층	5	167,650,000	336,550,000	504,200,000	10,000,000	40,420,000	50,420,000	50,420,000	50,420,000	50,420,000	50,420,000	50,420,000	151,260,000
59C3	2층	4	164,465,000	305,435,000	469,900,000	10,000,000	36,990,000	46,990,000	46,990,000	46,990,000	46,990,000	46,990,000	46,990,000	140,970,000
	3~4층	8	164,465,000	315,335,000	479,800,000	10,000,000	37,980,000	47,980,000	47,980,000	47,980,000	47,980,000	47,980,000	47,980,000	143,940,000
	5~7층	12	164,465,000	330,135,000	494,600,000	10,000,000	39,460,000	49,460,000	49,460,000	49,460,000	49,460,000	49,460,000	49,460,000	148,380,000
	8~10층	12	164,465,000	336,135,000	500,600,000	10,000,000	40,060,000	50,060,000	50,060,000	50,060,000	50,060,000	50,060,000	50,060,000	150,180,000
	11~14층	16	164,465,000	338,535,000	503,000,000	10,000,000	40,300,000	50,300,000	50,300,000	50,300,000	50,300,000	50,300,000	50,300,000	150,900,000
72B	2층	2	203,175,000	377,325,000	580,500,000	10,000,000	48,050,000	58,050,000	58,050,000	58,050,000	58,050,000	58,050,000	58,050,000	174,150,000
	3~4층	4	203,175,000	389,525,000	592,700,000	10,000,000	49,270,000	59,270,000	59,270,000	59,270,000	59,270,000	59,270,000	59,270,000	177,810,000
	14층	1	203,175,000	418,325,000	621,500,000	10,000,000	52,150,000	62,150,000	62,150,000	62,150,000	62,150,000	62,150,000	62,150,000	186,450,000
74B1	2층	1	205,380,000	381,420,000	586,800,000	10,000,000	48,680,000	58,680,000	58,680,000	58,680,000	58,680,000	58,680,000	58,680,000	176,040,000
	3~4층	2	205,380,000	393,720,000	599,100,000	10,000,000	49,910,000	59,910,000	59,910,000	59,910,000	59,910,000	59,910,000	59,910,000	179,730,000
	5~7층	3	205,380,000	412,320,000	617,700,000	10,000,000	51,770,000	61,770,000	61,770,000	61,770,000	61,770,000	61,770,000	61,770,000	185,310,000
	8~9층	2	205,380,000	419,720,000	625,100,000	10,000,000	52,510,000	62,510,000	62,510,000	62,510,000	62,510,000	62,510,000	62,510,000	187,530,000

■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
구분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
아파트 분양금액	우리은행	1005-104-600470	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외2	입금시 동·호수,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

※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,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※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, 입금자명을 '1010203홍길동'으로 기재) (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[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]) ※ 분양대금의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 ※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※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■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

[단위 : 원, VAT포함]

주택형(약식표기)	발코니 확장금액	계약금 10% (계약시)	잔 금 90% (입주지정일)
59C	12,000,000	1,200,000	10,800,000
59C1	13,964,000	1,396,400	12,567,600
59C3	14,428,000	1,442,800	12,985,200
72B	12,356,000	1,235,600	11,120,400
74B1	15,247,000	1,524,700	13,722,300

※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-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. -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,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- 계약금 납부 :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,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,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이자는 없습니다. (예시 101동 0203호 경우, 입금자명을 '1010203홍길동'으로 기재) - 계약금 및 잔금납부 :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. (예시 101동 0203호 경우, 입금자명을 '1010203홍길동'으로 기재)

구분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
발코니 확장 공사비	농협은행	301-0376-2083-71	계룡건설산업(주)	입금시 동·호수,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

3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

[2025.03.3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3(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) 개정 사항]

조항	특별공급 신청유형	내용	유의사항
제1항 (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)	신혼부부, 생애최초	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	- 적용 횟수 제한 없음
	생애최초	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(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)	
제2항 (혼인특례)	신혼부부	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(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횟수 제한)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	-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
제3항 (출산특례)	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	'24.6.19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또는 '24.6.19.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)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→ 이 경우,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*으로 청약신청 가능 ***기존주택 처분 조건** :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- 1.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- 2.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4항 각호)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- 3.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→ 이 경우, 신혼부부 특별공급(공공주택 제외)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	-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-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-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 -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

※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,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·취소할 수 없습니다. -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,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,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 -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,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. ※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. ※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, 입주가 불가합니다.

구분	내용
공급 기준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■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에 따름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다만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구분		처리방법
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		**당첨자 발표**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, **당첨자 발표**일이 늦은 당첨 건은 **부적격 처리**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	**접수일시**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, **접수일시**가 늦은 당첨 건은 **무효**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나이(연월일 계산)가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
	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	모두 **부적격** 처리

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■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

구분	내용
무주택 요건	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(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"입주자 모집공고 전문 1 공통 유의사항" 참조) 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
청약통장 자격요건	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기관추천(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노부모부양 /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(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**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**

구 분	그 밖의 광역시(인천광역시)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㎡ 이하	250만원	300만원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400만원	60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700만원	1,000만원	400만원
모든면적	1,0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음

4 일반공급 신청자격

구분	내용
대상자	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■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
청약통장 자격요건	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1순위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2순위 :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**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**

구 분	인천광역시(그 밖의 광역시)	서울특별시(특별시 및 부산광역시)	경기도(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)
전용면적 85㎡ 이하	250만원	300만원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400만원	60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700만원	1,000만원	400만원
모든면적	1,0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

5 청약 신청방법

■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(PC·모바일) - 경로 : 청약홈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신청 → APT →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→ 청약자격 등 입력 →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→ 청약신청 완료 - 청약신청 시간* : 09:00~17:30 * 17: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, 청약 신청 진행 중 17:30이 지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**■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(PC·모바일)** - 경로 : 청약홈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신청 → APT → 청약 취소 →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 선택 →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→ 청약신청 취소 완료 -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: 청약신청일 당일 09:00~17:30 * 청약신청일 당일 17: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, 청약신청일 당일 17: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**■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(현장접수, 정보취약계층에 한함)** -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관한 확인(검증)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. - **특별공급** :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:00~14: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**일반공급** :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:00~16: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**■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**하고 있습니다.

구분		내용
마이데이터 ('청약도움e') 서비스		-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, 주민등록표등·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-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,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(정보 보유기관)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**이용 방법** : 청약신청 → APT → 청약홈 마이데이터('청약도움e') 서비스 팝업 →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
공고단지 청약연습		-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, 해당 세대원(성년자에 한함)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,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나 세대원의 청약자격(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)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,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. - 세대원 등록 방법 : 청약자격 확인 → 세대 구성원 등록/조회 및 세대 구성원 동의 - **이용 방법** : 공고단지 청약연습 →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(단,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)
당첨자발표 서비스	청약홈	- **조회 방법** : 청약홈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 당첨조회 - **조회 기간** : 2025.12.02.(화)~2025.12.11.(목) (10일간) - 조회 기간(10일)이 지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→ 청약 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→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 내용 확인 가능 - 현장 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(주택명, 주택형, 성명, 생년월일 입력) 만으로 당첨 내용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용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 * PC·모바일 신청자는 '정보입력'에 의한 당첨 내용 조회 불가(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'당첨 내용이 없음'으로 표기됨) -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.
	문자	- **제공일시** : 2025.12.02.(화) 08:00 (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- **제공대상** : 청약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(예비)자 * **당첨자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(URL)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,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(URL)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.** -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
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

■ 당첨자(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) 자격검정 서류 제출 안내

구분	제출대상자	제출일시	서류 제출 장소
특별공급	당첨자 전원 (예비입주자 포함)	2025.12.08.(월) ~2025.12.12.(금) 10:00 ~ 16:00	▪ 엘리프 원종 견본주택(주소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) ※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
일반공급			

■ 유의사항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용과 대조,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. -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입니다. -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,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 -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-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. (세대주, 해당지역 거주기간, 주택 소유, 배우자 분리세대 등) -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,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. -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(당첨자 제출서류 참조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-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해야 하며,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 -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-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. 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) -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. -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정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(단, 계약체결 시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정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,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,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(청약통장 부활)되며,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. -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위·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, 「주택법」 제65조(공급질서 교란 금지)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

■ 신청일정 및 계약장소

구분	계약기간	계약 장소	문의전화	비고
당첨자 계약 체결	2025.12.15.(월)~12.17.(수) 3일간, (10:00~16:00)	엘리프 원종 견본주택 (주소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)	032-677-7775	※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

■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
구분	금융기관	납부계좌	예금주	비 고
아파트 분양금액	우리은행	1005-104-600470	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외2	입금시 동·호수,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

※ 본 사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보증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으로 납부시 계좌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 기타 주요사항

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-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. -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,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-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

보증서 번호	보증금원	보증기간
제 06712025-101-0000600 호	35,293,720,000원	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(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)까지

■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

[단위 : 원, VAT포함]

구 분	건축 감리	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
회사명	예닮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	주식회사 신화에프이씨
감리금액	1,281,470,690원	216,810,000원

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

구 분	시 행 자	시 공 사
상호명	원종공항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	계룡건설산업㈜
법인등록번호	121171-0007497	160111-0003121
주소	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101번길 38, 4층 405호 (원종동, 금홍씨비엠상사)	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(탄방동)

■ 입주시기 : 2028년 01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-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.
-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ELIF 원종

총 207세대 59㎡ / 61㎡ / 72㎡ / 74㎡ / 84㎡

홈페이지 www.엘리프원종.com

032)677.7775

·시행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·시공 계룡건설

※ 본 모집공고는 공급(분양)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,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, 공급(분양)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(분양)계약서 내용이 우선시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모집공고 및 공급(분양)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.

현장 |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8-1번지 일원
분양홍보관 |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59